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05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
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
다)”를 “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1호 중 “‘직무’라 함은 의회의원이”를 “‘직무’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

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의장의 명예 의한”을 “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(이하 ”의장“이라 한다)명예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2호 중 “의정활동비’라 함은”을 “의정활동비’란”으로 하고,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3호 중 “유족’이라 함은”을 “유족’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 1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‘시의회’라 한다) 해당 연도”로 하고, 2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”를 “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”로 하며, 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4호 중 “규정에 의한” 및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장애’라 함은”을 “장애’란”으로, “제45조에 규정된 ‘폐질등급’ 1급”을 “제45조에 따른 ‘장애등급’ 제1급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상해’라 함은”을 “상해’란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회장(이하 ‘의장’이라 한다)”을 “서식에 따라 의장”이라 한다.

제7조 중 “심의결과에 의거”를 “심의결과에 의하여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구좌”를 “계좌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광진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”로, 같은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광진구청”을 “구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제1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 제3항 중 “제6조2항의”를 “제6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서식에 의거”를 “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광진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·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"령"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</u>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"<u>직무</u>"라 함은 <u>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</u></p> <p>2. "<u>의정활동비</u>"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</p> <p>3. "<u>유족</u>"이라 함은 <u>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"<u>직무</u>"란 <u>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 의원이</u> 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의 명에 따른</u> -----.</p> <p>2. "<u>의정활동비</u>"란 ----- 규정에 따른 ----- -.</p> <p>3. "<u>유족</u>"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----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(생략)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u>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u></p> <p>3. <u>기타</u>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.</p> <p>4. 제2호 또는 제3호의 <u>규정에 의한</u>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의원 해당 연도</u> -----</p> <p>2. ----- ----- <u>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</u> ----- -----</p> <p>3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제2호의 <u>"장애"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"폐질등급"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② 제4조제1항제3호의 <u>"상해"라 함은</u>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 ----- <u>"장애"란</u> ----- <u>제45조</u> <u>에 따른 "장애등급"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"상해"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<u>기타</u>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본인 또는 <u>당해</u>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</p>	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식에 따라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<u>심의결과에 의거</u>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7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----- ----- <u>심의결과에 따라</u> -----.</p>
<p>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<u>구좌</u>에 입금한다.</p>	<p>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----- ----- <u>계좌</u>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직무로 인한 사망·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"구"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광진구청 소속공무원 중 관련 국장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구 소속공무원 중 관련 국장</u>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<u>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	<p>③ <u>제2항제1호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심의회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<u>통할한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심의회위원장의 직무) ① --- ----- ----- <u>총괄한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
<p>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심의회는 <u>제6조2항의</u>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<u>서식에</u>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제6조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서식에</u> <u>따라</u>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조(심의회회의 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간사는 <u>서울특별시광진구</u>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	<p>제14조(심의회회의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구</u> ----- -----.</p>

